

보도일시	2022. 1. 11.(화) 오전 *인터넷 2022. 1. 10.(월) 13:30 이후 / 총 11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과장 손필훈 서기관 최재운	044-202-8804 044-202-8811
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과장 양현수 사무관 박득영	044-202-8901 044-202-8903
	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과장 강검윤 서기관 박신원	044-202-8950 044-202-8951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

□ 정부는 1월 10일(월)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('22.1.27.)에 따른 '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 하였습니다.

○ 주요 내용은 불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불임) 1. '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(산업안전보건본부장 브리핑)

2. '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

### 불임 1

### '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

□ 지금부터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'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## '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

□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습니다.

○ 현장에서 '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' 는 안전 우선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.

□ '21년 산재 사고사망자(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)는 828명 으로 '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(△6.1%)했고, 사고사망만인율도 0.43‰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'9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.

\* 사고사망자(만인율): ('16) 969(0.53) → ('17) 964(0.52) → ('18) 971(0.51) → ('19) 855(0.46) → ('20) 882(0.46)

\*\* 업종별('21.): [건설] △41명(458 → 417명 [제조] △17명(201 → 184명), [기타] +4명(223 → 227명)

□ 사망사고 발생 기준\*(조사통계)으로는 '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(768 → 667명, △13.2%)했고,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\* 중대재해 중 근로감독관이 조사대상으로 집계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로 평균 4개월 후 공식통계(산재승인)에 반영 → '21.6월부터 전년대비 대폭 감소 추세(6월~12월, △116명)

□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최재운 서기관(☎ 044-202-88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'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**

**<1>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**

※ '21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(사망사고) 사업장: 190개소(건설109, 제조43, 기타38)

□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.

□ 우선,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('21.8월),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('21.11월), 업종별 자율점검표\*('21.9월~), 사고유형별 매뉴얼\*\*('21.4월~)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·배포하고,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금주 중 배포하겠습니다.

\* ▲('21.9월) 중소기업 ▲('21.11월) 폐기물처리업, 창고·운수업  
▲('21.12월) 건설업 ▲('22.1월) 도·소매업, 음식점업, 임업, 화학업

\*\* 지붕공사('21.4월 11월), 달비계('21.10월), 벌목('21.11월), 사다리·천막공사·폐기물처리('21.12월)

-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보급(1월말) 하겠습니다.

-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,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.

○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(400여개소 지원)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(50~299인, 3.5천개소)에 컨설팅\*을 실시하겠습니다.

\* ▲제조·기타업종 등 2천개소: 민간 전문기관 ▲건설·화학업종 등 1.5천개소: 안전공단

- 특히,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(1,700여개)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, 중소·중견 건설사(시공순위 201위 이하)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.

○ 1월 12일, '22년 제1차 '현장점검의 날' 일제 점검에 맞춰,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'21년 사고사폐집 등도 현장에 배포하겠습니다.

- 1월 중,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,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\*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.

\*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(koshasafety.co.kr) 등

□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,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○ 우리부는 국가기관,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\*했습니다.

\* 75개 중앙행정기관 및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'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' 배포('21.12.27)

○ 지자체가 수행·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'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\*'을 배포(12월말)했으며,

\* 주요 내용: ① 지자체 발주사업 등 안전관리 방안, ② 관내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지자체 활동,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

- 금년도 지자체 평가 시, 지자체 수행·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습니다.

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습니다.

○ 사법경찰직무법 개정('22.1.4.)에 따라

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(7개)에서

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,

- 사고를 야기한 유해·위험요인이 목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.

○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\*를 구축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,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.

\* 대검찰청 내 「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」('21.3월~)와 상시 협조 추진

-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\*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

작년 12월에 전용 누리집(koshasafety.co.kr)을 개설·운영 중이며,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

\* 가이드북, 업종별 자율점검표, 보도자료, Q&A, 홍보자료, 영상교육자료 등

## 〈2〉 현장 중심 점검·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
□ 우선, 사망사고 다발 업종(건설, 제조, 화학 등)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건설업 중소현장(1억~50억미만)은 패트론펙트를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, 초소규모 현장(1억미만)은 지붕공사, 달비계 등 위험작업\*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.

\* (지붕공사) 봄(3월), 가을(9월)에 공사유형별(공장, 건축공사, 측사, 태양광) 관련기관 협조 (달비계) 5,9월 위험경보 발령, 공동주택 외벽 도색·청소작업 현장점검, 원격교육 등

- 제조업은 고위험(끼임 등)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·회수,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, 자율점검 및 패트론펙트 결과 불량 사업장\* 위주로 감독하겠습니다.

\* (20~50인) 자율점검표 미회신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사업장 감독 대상 우선 선정 (5~20인) 기술지도 및 패트론펙트 결과 미시정 등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

○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(경영책임자)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(여수·울산·대산)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, 공정안전관리(PSM)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\*를 확대하겠습니다.

\*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화기·밀폐공간·독성물질취급 작업 등을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, 지방관서(중방센터)와 안전공단에 통보 시 적시 기술지도 실시

- 화재·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(보온재, 신나 등)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·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○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\*을 집중 점검하는 '현장점검의 날' 일제 점검을 운영하여

\* 추락위험 방지조치, 끼임위험 방지조치,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

-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(현장)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,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수칙 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\*는 1조 1천억원입니다.

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·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\* 산재예방 사업 예산: ('19) 3,644억원 → ('20) 5,134억원 → ('21) 9,770억원 → ('22) 1조 921억원

○ 추락·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.

- 시스템 비계 뿐 아니라, 사다리형 작업발판,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'유해·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'(22. 1,197억원)을 확대하고,
-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·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,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·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(22. 3,271억원)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.

\* ▲노후위험공장: (21) 뿌리산업 3대 공정 → (22) 기계기구, 화학고무 수제품제조등 3개 공정 추가  
▲위험기계기구: (21) 이동식크레인 등 3종 → (22) 프레스, 컨베이어, 롤러기 등 6종 추가

○ '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성 평가\*'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감면(3년간, 20%)하고,

-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,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\* 사업(22. 565억원)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, '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하겠습니다.

\* (21.) 작업환경 5만개소, 특수건강 35만명 → (22. 목표) 작업환경 7.4만개소, 특수건강 53만명

○ 아울러, 소규모 현장(건설 1억미만, 제조 50인미만)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.

\* (21년 361억원) 사고 핵심위험요인 점검 및 산재예방 관련 자료 교부 등 → (22년 450억원)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컨설팅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등 추가 확대

□ 현장 중심 산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.

- '현장 실천안전수칙\*'과 '작업 전 10분 점검' 등을 핵심메시지로 하여 노동자 안전의식을 높이고,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\* (예시) ①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 
② 위험기계장비 보수·정비 전 반드시 운전 정지  
③ 덤프트럭 등 차량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

### <3>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

□ 우선,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(고용부, 안전공단,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)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\*를 구축하겠습니다.

\* 3월부터 6개 권역(서울·충청·전라·경북·경남)별 '직업병 모니터링 센터' 설치·운영 추진

- 이를 통해,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
-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.

□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.

-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,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미설치: 15백만원, 기준 미준수: 10백만원)
- 노·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,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·관리 기준을 마련하고,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.

□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, 조선업계 무용제도로 피부질환,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

-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명령,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,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
\* (학교 급식노동자) 폐암 건강기준 마련 및 교육청·교육부 지도 (무용제도로)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무용제도로 사용으로 피부질환 발생 → 임시건강진단 명령, 안전보건개선지도, 사측에 무용제도로 사용중단 개선안 마련 요구 (3D프린터) 과기부 주관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→ 추가대책 논의 및 집단역학조사 실시 검토

#### <4>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- 우선,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, 노·사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'가칭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'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.
  - \* 중장기 산재예방대책 수립 및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 심의,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실태조사,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등 논의
-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\*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, 지자체(공공기관) 발주공사\*\*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
  - \* 광역 단위로 고용부(지방고용노동관서), 지자체, 안전공단,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업 체계
  - \*\* '21년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는 46명(20년 45명)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10% 수준
-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'가칭 산업안전지도관'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.
  - \* 지자체 공무원에게 소규모 건설현장 출입·지도 권한 및 불량사업장 고용부 통보 의무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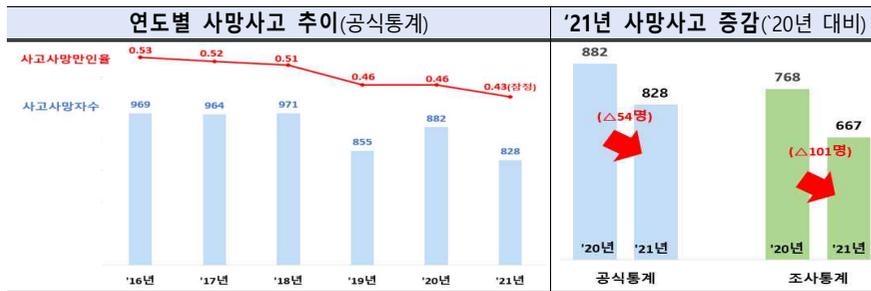
#### 노·사에 대한 요청과 마무리

-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준비하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.
  -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.
-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
  - 첫째,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,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.

- 둘째, 사고의 발생,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, 작업과정의 유해·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합니다.
- 셋째, 개선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, 인력,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해야 합니다.
-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.
  - 기업은 ① 안전에 대한 무관심, ② 위험의 방치, ③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목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,
  - 노동자는 '작업 전 안전미팅'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- 정부는 올해도 안전 의식과 관행의 변화,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□ 총괄

- (사망사고 공식통계) '17~'18년 900명 중·후반대에서 '19년 855명 → '20년 882명으로 감소\*, '21년은 전년대비 54명 감소\*\* (882 → 828명)
  - \* 사고사망자(만인율): ('16) 969(0.53) → ('17) 964(0.52) → ('18) 971(0.51) → ('19) 855(0.46) → ('20) 882(0.46)
  - \*\* 건설업: △41명(458 → 417명), 제조업: △17명(201 → 184명), 기타업종: +4명(223 → 227명)
- 사고사망만인율은 0.5 초중반에서 '19년 0.4대로 진입, 감소 추세 지속
- (사망사고 발생현황) 올해 6월 이후 발생 기준 조사통계 감소 추세 지속 → '21년은 전년대비 101명 감소(768 → 667명)



□ 세부 현황

- (업종·유형별) 건설업에서 절반 이상 발생\*, 필수보호구 착용으로 예방 가능한 추락·끼임의 재래형 사고\*\*가 절반 차지
  - \* 건설업 비중(%): ('16) 51.5 → ('17) 52.5 → ('18) 49.9 → ('19) 50.1 → ('20) 51.9 → ('21) 50.3
  - \*\* 추락+끼임(%): ('16) 48.3 → ('17) 48.5 → ('18) 50.4 → ('19) 53.0 → ('20) 48.3 → ('21) 53.9
- (규모별)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\*에서 사망사고의 대부분 발생
  - \* 건설 50억 미만(%): ('16) 65.3 → ('17) 66.2 → ('18) 66.6 → ('19) 66.1 → ('20) 72.3 → ('21) 71.5
  - 제조업 등 50인 미만(%): ('16) 73.2 → ('17) 76.2 → ('18) 77.6 → ('19) 82.2 → ('20) 80.9 → ('21) 78.6

⇒ 21년 산재 사망사고 828명, 사고사망만인율 0.43‰으로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'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

⇒ 사망사고 발생\*(조사통계) 추이 등 감안, 내년에도 감소 추세 지속 전망

\* '21. 6월부터 조사통계 기준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(6월~12월말: 493 → 377명, △116명)